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530 - 4774)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05. 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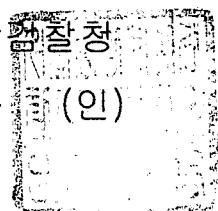
문서번호 61100- 5997

수신최한수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목 불기소이유고지

검사전형근



| | | |
|-----------------|----------|--------------------------------|
| ① 사 건 번 호 | | 서울중앙지검 2002형제98081호 |
| ② 고 발 인 성 명 | | 참여연대 |
| 피의자 (피고발인) | ③ 성 명 | 1. 김 승 연 2. 김 정 3. 신 수 범 |
| | ④ 주민등록번호 | 생략 |
| ⑤ 죄 명 | | 증권거래법위반 |
| ⑥ 처 분 연 월 일 | | 2005. 3. 31. |
| ⑦ 처 分 요 지 | | 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
| ⑧ 공 소 부 제 기 이 유 | | 별지와 같음 |
| ⑨ 비 고 | | |

본건 피의사설의 요지를 검찰주사보 작성의 고발사건직접조사상황

보고서 고발사설 요지와 같음

수사한 결과

1. 인정되는 기초사실 및 쟁점 사항

가. 부의 영업권 일시 환입

- (주)한화가 1999년도에 발생한 부의 영업권 1,277억원 전액을 일시에 환입하여 당해연도 당기 순이익이 794억원에서 2,071억원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도에 발생한 부의 영업권 2,034억원 전액을 일시에 환입하여 977억원이던 당기순손실이 당기순이익 1,057억원으로

전환된 사실은 인정됨

- (주)한화유통이 1999년도에 발생한 부의 영업권 1,965억원 전액을 일시에 환입하여 545억원이던 당기순손실이 당기순이익 1,420억원으로 전환되었고 2000년도에 발생한 부의 영업권 1,589억원 전액을 일시에 환입하여 382억원이던 당기순손실이 당기순이익 1,208억원

으로 전환된 사실은 인정됨

- 한화석유화학(주)가 1999년도에 발생한 부의 영업권 1,214억원 전액을 일시에 환입하여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이 145억원에서 1,359억원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도에 발생한 부의 영업권 8백만원을 전액 환입하여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이 162.97억원에서 163.05억원으로 확

대된 사실은 인정됨

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및 시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2002. 3. 14. 1999 회계연도부터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를 하도록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적용실

태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본건 한화그룹 3개 계열사 포함 8가 회사
가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환입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
로 판단하여 유가증권발행체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 및 해당 감사
인에 대하여 징계를 한 사실이 인정됨

-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분법 회계가 도입 초기인 점, 처리 기준
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가공매출 계상 등과 같은 고의적
인 회계조작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제재보다는 지도·계몽 차
원에서 적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올바른 회계 관행을 확립
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을 엄격히 해석하여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고, 한편 본건 한화그룹 3
개 계열사를 포함한 8가 회사가 지분법 적용이 잘못된 사실에 관하
여 고의적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
여 과실로 판단하고 위와 같은 행정제재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됨
- 위와 같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의하여 (주)한화 및 (주)
한화유통은 각 2002. 4. 1., 한화석유화학(주)는 같은해 3. 31.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한 부분을 수정 분개하여 공시한 사실이 인정됨

다. 핵심 쟁점 사항

- 고발인은 본건과 같은 부의 영업권의 일시 환입이 한화그룹이 추진
하던 대한생명 인수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계처
리기준을 위배한 분식회계(즉, 사업·반기·분기보고서, 유가증권신
고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의자들은 부의 영업권의
일시 환입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며 가사 위배된다고 하

더라도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분식회계를 한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본건의 핵심 쟁점 사항은 부의 영업권의 일시 환입이 가능한 것인지, 피의자들에게 위와 같은 기업회계기준 위반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등임

2. 고발인 주장

- 1998년경 한화그룹과 주거래은행 사이에 한화그룹이 2002년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기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1999. 7. 23. 공고한 '금융기관 설립 등 인허가 지침', 2000. 1. 21. 개정된 보험업법에 신설된 제5조 의3(허가요건), 이에 따라 2000. 6. 23.부터 시행된 '별표1'등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2002. 4. 29.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위 규정은 보험회사를 신규 설립시 적용되는 규정이고 기존의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보험회사인 대한생명을 반드시 인수하려던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할 필요성이 높았다고 주장
- 본건 한화그룹 3개 계열사의 5% 이상 소유 대주주는 (주)한화 계열사나 그 우호지분일 뿐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위협할 세력은 없었으므로 본건 계열사간 거래는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결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대량의 주식 거래는 의도적으로 부의 영업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한화에너지를 매각하면서 동 회사가 가지고 있던 한화그룹 계열회사들의 주식을 굳

이 본건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매수한 것도 부의 영업권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 결과 2회계연도에 8,000억원 상당의 부의 영업권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1999. 6. 29.시행), 연결재무제표준칙,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1999. 3. 24.제정, 2000. 1. 1.시행)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한화그룹 계열사간 주식 취득으로 발생한 부의 영업권은 가중평균내용연수를 구하여 정액법으로 환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부의 영업권을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비록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이 2000회계연도부터 시행토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1999. 3. 24. 제정되어 발표되어 있던 시행토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1999. 3. 24. 제정되어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에 관한 상식이 있다면 1999년 회계에도 위와 같이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3. 피의자측 변소 내용

가. (주)한화측 변소

- 참고인 홍동욱((주)한화 회계담당 이사), 이순종((주)한화 대표이사)은 한화석유화학(주)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한화석유화학에서 NCC부분을 분리하여 여천NCC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한화석유화학이 매수하였는데, 이는 자사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최대주주인 (주)한화가 안정적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한화석유화학의 자사주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 또는 대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일 뿐 지분법이 도입된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부의 영업권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며, 대한생명의 매각과 관련하여 입찰조건으로 부채비율 200% 이하라는 요건은 없었고, 부의 영업권 전액을 일시 환입하지 않더라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기 때문에 주거래은행과의 약정 및 대한 생명을 인수하기 위해서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한 것은 아니며, 부의 영업권을 환입함에 “20년 이내의 기간 중 합리적 기간동안 정 액법으로 환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합리적 기간에 관하여 기업 회계기준 해석상 지침 또는 구체적인 사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외부감사인이 금융감독원 등에 합리적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사례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합리적”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 적용사례 등에 관하여 답변은 듣지 못하였지만, 20년 이내의 합리적 기간에 걸쳐 환입하였는데, 일시 환입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어서 일시 환입하였던 것이고, 만약 외부감사인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일시 환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면 결산서에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소

- 그리고 이러한 부의 영업권 일시 환입은 참고인 홍동욱이 참고인 이순종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고 처리한 사안으로 피의자 김승연에게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주장

○ 피의자 김승연은 (주)한화의 부의 영업권 일시환입 사실 자체를 보고 받지 못하여 몰랐을 뿐 아니라 나머지 2개 회사의 부의 영업권 일시 환입 자체를 보고 받지 못하였다고 변소

나. (주)한화유통측 변소

○ 피의자 김정{(주)한화유통 대표이사}은 그룹 구조조정본부와 상의하

지 않고 (주)한화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나 대주주로서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동양백화점도 인수 후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대주주로서 참여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주식을 인수한 것일 뿐이지 의도적으로 부의 영업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거래가 아니며, 부의 영업권 일시 환입과 관련하여 당시 최종 결정은 구조조정본부와 상관없이 회계 담당임원이 부의 영업권의 일시 환입에 관하여 외부감사인인 회계사에 일임을 하였고, 회계사 등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시 환입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한 후 담당 임원이 이를 피의자 자신에게 보고를 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일시 환입을 지시하였던 것이며, 한편 주거래은행과 한화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알지만, 부채비율을 낮추기로 한 계획, 그 이행실적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한화그룹이 1999. 6.경부터 대한생명을 인수하려는 것도 모르다가 2002. 9.경에서야 (주)한화유통이 대한생명 인수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알게 되었다고 변소

○ (주)한화유통 경리책임자인 한권태의 진술도 피의자 김정의 진술과 대동소이함

다. 한화석유화학(주)측 변소

○ 피의자 신수범{한화석유화학(주) 대표이사}은 구조조정본부와 상의 없이 (주)한화유통 등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한화에너지의 현대정유에 매각하면서 한화에너지가 보유한 한화유통 주식을 피의자 회사가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매입한 것으로 이 또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나 대주

주나 주요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일 뿐이며 부의 영업권 일시 환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그룹 구조본과 상관없이 회계담당팀장과 임원인 정태영, 백승태가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에 관하여 외부감사인인 회계사와 금융감독원 등에 확인하여 일시 환입을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일시환입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한편 주거래은행과 한화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알지 못하고, 1999. 6. 7.자, 1999. 6. 28.자 한화그룹의 입찰제안서 제3항 기본전제조건란에 “한화그룹 부채비율 200% 유지”라고 제안한 내용도 구조조정본부에서 전담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서 대한생명 인수를 위하여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하여 부채비율을 낮춘 것은 아니라고 변소

○ 한화석유화학(주) 경리 팀장인 정태영의 진술도 피의자의 진술과 대동소이함

4. 참고인 진술 등

○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장석일은 피고발된 한화그룹 3개 계열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지분법의 회계처리)에서 “부의 영업권은 발생한 당해연도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중 합리적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환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동 해석에서 미비한 규정은 2000. 3. 22.개정한 ‘연결재무제표준칙’을 준용하고, 그래도 미비할 경우 1999. 3. 24. 제정되고 2000. 1. 1.부터 시행토록 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기준’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1999년도에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기준’이 적

용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화그룹과 같은 대기업과 회계사들이 합리적인 회계처리 원칙에 따른 회계처리를 모색했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고, "합리적 기간동안"의 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의하면 가중평균내용연수를 구하여 정액법상 주로 사용되는 월할 방법으로 환입할 경우 부의 영업권이 발생한 당해연도에 전액 환입할 수 없고, 부득이 연할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회계연도 상반기에 발생한 부의 영업권은 전액 환입하더라도 하반기에 발생한 부의 영업권은 전액 환입할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의자들 고의 행위를 고의로 인정할 수 없어 과실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여 고발인 진술 및 피의자들 진술에 각 일부 부합

- 이에 반하여 본건 한화그룹 3개 계열사를 감사한 회계사들은
- 기업회계기준 제59조와 관련하여 세부지침인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에서 투자제거차액은 20년 이내의 합리적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환입토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합리적 기간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연결재무제표 준칙은 1998. 4. 1. 제정되고 2000. 3. 22. 개정되기 직전까지는 투자 제거차액에 의한 부의 영업권(또는 영업권)은 5년 이내의 매결산기 예에 균등하여 환입(또는 상각)하도록 하였는데 중요한 금액이 아닐 경우 일시 환입도 가능하다고 규정하였고,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 준용토록 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은 1999. 3. 24. 제정 되고, 2000. 1. 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1999회계연도에는 적용할 수 없었으며, 2000. 1. 1.경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었음에

도 위 제 규정들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서로 상충되어 통일된 회계처리 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나라 회계법인들은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에서 제시한 가중평균 내용연수를 구하여 적용하지 않고,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통상 즉시/1년/3년/5년 /10년/20년 단위로 무작위로 분할하여 환입하여 왔었던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까닭으로 2001. 4. 20. 경에서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기업회계 기준 등에 관한 해석 적용 사례 2001-5(지분법 하에서 부의 영업권의 환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발표하여 위와 같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부의 영업권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가중평균 내용연수를 구하여 정액 법으로 환입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2001년 상반기까지는 해당 기업 또는 회계사가 "합리적"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시 부의 영업권을 여러 해 동안 분할하여 환입하면 환입하는 기간 동안 적자기업이 매해 흑자를 내는 것처럼 회계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의 영업권 전액을 발생한 당해 연도에 일시 환입하고, 이를 주식에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일시 환입한 것이고

- 기업회계기준 등 제 규정의 제·개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회계연구원에서 2004. 9. 17. 의결하고 2004. 12. 경 공인회계사지에 발표한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4-27호 사업결합 제1단계'에 의하면 부의 영업권은 발생 즉시 일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기존의 기업회계기준, 동 해석, 기업인

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한 부의 영업권 환입 방법이 반드시 옳다고만 할 수 없다면서

- 당시 본건 3개 계열사의 회계담당 직원들로부터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환입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받고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부의 영업권의 환입기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고 관련 규정들이 서로 상충되던 점,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전화로 확인하여 보니 일시에 환입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인하여 보니 일시에 환입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여전을 내면서 감사보고서 등의 주석에 발생금액, 일시 환입한 사실 등을 공시하면 재무제표의 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의자들의 변소에 부합

5. 판단

- 가. 본건 거래가 부의 영업권 창출을 위한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여부
- 고발인은 피의자들이 대한생명 인수를 위하여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할 목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당기순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필요 없는 본건 주식 거래를 하고, 그 거래를 통하여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환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본건 주식 거래들의 태양을 살펴보면 대주주로서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한 경우나 다른 계열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주식 취득이 있는 등 부의 영업권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적인 거래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거래들도 상당수 있어 피의자들의 변소를 뒤집고 본건 주식 거래들이 부의 영업권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적 거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나. 기업회계기준위반(사업·반기·분기 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허위 기재)의 처벌 요건

- 피의자들의 본건 주식 거래들이 부의 영업권 창출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든 아니면 본건 거래들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이든간에 이러한 거래들로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기업회계기준 위반 행위, 즉 사업·반기·분기 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부의 영업권 일시 환입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 분식회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위와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대로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피의자들에게 분식회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부의 영업권 일시 환입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피의자들의 기업회계기준위반(사업·반기·분기 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등의 허위 기재)에 대한 고의 여부
 - 피의자들은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상의를 거쳐 부의 영업권의 일시 환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일시 환입한 것이지 외부감사인이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면 아무리 자신들이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하고 싶어도 이를 할 수 없었다고 변소하고, 외부감사인이었던 참고인 구승희, 임근구, 최권수 등도 본 건 한화그룹 3개 계열사 회계담당자들로부터 일시환입 가부에 관하여 질의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한 후 위

와 같은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일시 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의견서에 적정 의견을 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므로, 이러한 점
에 비추어보면 피의자들이 외부감사인과 공모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환입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전
문가인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한 피의
자들에게 기업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분식회계(기업회계기준위반)를 자행하는 경우,
주주나 사외이사, 이바이더에게 이를 은폐하려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인 바, 피의자들이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하는 것이 분식회계
라고 인식하였다며 이를 은폐하려 함이 상당함에도 외부 감사 초기
부터 외부 감사인과 처음부터 상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일
반적인 분식회계 사범에서 볼 수 없는 행태이며, 더구나 위와 같은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하였다는 사실을 감사보고서의 주석에 기
재하고 공시(한화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주석에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한다는 기재는 없으나 발생된 부의 영업권(지분법 평가이익)
전액을 계상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외
부감사인이나 피의자들에게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하는 것이 분
식회계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발각될 경우 처벌이나 제재를 받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주
석에 기재하고 공시하는 것은 경험칙상 있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
이므로 결국 피의자들에게는 본건 기업회계기준위반의 고의를 인정
하기 어렵고

- 한편 2001. 10.경 금융감독원에서 지분법 적용실태에 관하여 감리를

한 결과 발생한 부의 영업권을 위 규정대로 가중평균내용연수를 구하지 않고 무작위로 2년 또는 3년으로 나누어 환입한 기업 등에 대하여는 분식회계로 적발하지 아니한 사실(당해연도에 일시 환입한 한화그룹과 무작위로 2년 또는 3년에 나누어 환입한 기업들을 구분하여 평가할 객관적 기준 없음), 2002. 3. 14.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본건 한화그룹 3개 계열사를 포함한 8개 법인의 부의 영업권 일시 환입을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재하면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하여금 행정개재판을 주기한 사실에 비추어봐도 피의자들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6. 결어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에게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환입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사업·반기·분기 보고서, 유가증권 신고서 등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인식, 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혐의 없음

주문과 같이 결정함

{ 본건 고발에는 한화석유화학(주)가 1999년도에 여천NCC합작법인 설립시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내부미실현이익을 제거하지 않은 사실 및 2000년도에 전년도 여천 NCC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내부미실현이익을 50퍼센트만 제거한 사실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고발장에는 언급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발된 것으로 보더라도 피의자 신수범은 회계담당 임원이 외부 감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였다고 변소하고 외부감사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므로 이 부분 또한 기업회계기준 위반

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무고판단 : 본건 고발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무

고혐의 인정하기 어려움



V. 고발사실 요지

피의자 김승연은 (주)한화의 대표이사겸 한화그룹의 회장인 자, 같은 김정은 1999. 3. 경부터 현재까지 한화그룹 계열사인 (주)한화유통 대표 이사로서 회사의 운영, 재정 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 같은 신수범은 1999. 3. 1. 경부터 2002. 11. 경까지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석유화학(주)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 재정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2002. 12. 경부터 현재까지 (주)한화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인바,

1999. 경 한화그룹과 주채권은행인 한일은행(현, 우리은행) 사이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1999연도말까지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낮추기로 하였고, 1999. 5. 19. 경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대한생명보험(주)의 입찰조건으로 자본충실화기여도, 자금조달가능여부, 보험산업발전 공헌 가능성 등을 내세워 당시 한화그룹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이상으로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면 대한생명보험(주)을 인수할 수 없어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마침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 1999회계연도부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20%이상 보유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토록 하여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발생한 투자제거차액을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에 배분한 후 남는 잔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보아 20년 이내의 기간 중 합리적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환입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투자제거차액 전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인식하여 당해 회

기연도에 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증가시키거나
혹자로 전환시키거나 혹자를 증가시키는 방법 등으로 허위의 재무제
표를 작성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 피의자 김승연은

1999회계연도 기간 중 한화석유화학(주) 주식 854.44억원 상당을, 한
화국토개발 주식 295억원 상당을, 한화역사 주식 25억원 상당을 각
매입하여 지분법 평가를 통해 발생한 투자제거차액 1,277억원 상당
전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인식하여 이를 가중평균내용연수를 구하여
정액법으로 환입하지 아니한 채 당해연도에 일시 환입하여 794억원
의 당기순이익을 2,071억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으로 과다 계상한 대차
대조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00회계연도 기간 중 한화
석유화학 주식 420.38억원 상당을, 한화역사 주식 690억원 상당을 각
매입하여 지분법 평가를 통해 발생한 투자제거차액 2,034억원 상당
전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인식하여 이를 가중평균내용연수를 구하여 정
액법으로 환입하지 아니한 채 당해연도에 일시 환입하여 977억원 상
당의 당기순손실을 1,057억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으로 과다 계상한 대
차대조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01. 5. 15.경 1/4분기 분
기보고서, 같은 해 7. 13.경 유가증권신고서, 같은 해 8. 14.경 반기보
고서, 같은 달 22.경 유가증권신고서, 같은 해 11. 14.경 3/4분기 분기
보고서를 각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하여
허위로 작성된 1999회계연도 및 2000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포함시

제 6회 정기분 분기보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사업보고서

, 분기보고서 등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고,

2. 같은 김정은

1999회계연도 기간 중 (주)한화 주식 542.92억원 상당을 매입하여 지
분법 평가를 통해 발생한 투자제거차액 1,965억원 상당 전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인식하여 이를 가중평균내용연수를 구하여 정액법으로
환입하지 아니한 채 당해연도에 일시 환입하여 545억원 상당의 당기
순손실을 1,420억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으로 과다 계상한 대차대조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00회계연도 기간 중 (주)한화 주
식 204.99억원 상당을, 동양백화점 주식 348.7억원 상당을 각 매입하
여 지분법 평가를 통해 발생한 투자제거차액 1,589억원 상당 전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인식하여 이를 가중평균내용연수를 구하여 정액법으
로 환입하지 아니한 채 당해연도에 일시 환입하여 381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1,208억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으로 과다 계상한 대차대
조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01. 5. 15.경 1/4분기 분기보
고서, 같은 해 8. 14.경 반기보고서, 같은 해 11. 14.경 3/4분기 분기
보고서, 2002. 1. 21. 유가증권신고서, 같은 해 2. 7.경 유가증권신고서
를 각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부의 영업권을 일시 환입하여 허위
로 작성된 1999회계연도 및 2000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포함시켜 작
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사업보고서, 분기
보고서 등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고,

1999회계연도 기간 중 (주)한화유통 주식 904.04억원 상당을, 한화
국토개발 주식 265억원 상당을, 한화증권 주식 88.42억원 상당을
각 매입하여 지분법 평가를 통해 발생한 투자제거차액 1,214억원
상당 전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인식하여 이를 가중평균내용연수를
구하여 정액법으로 환입하지 아니한 채 당해연도에 일시 환입하
여 145억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1,359억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으
로 과다 계상한 대차대조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00
회계연도 기간 중 한화역사 주식 4.31억원 상당을 매입하여 지분
법 평가를 통해 발생한 투자제거차액 800만원 전액을 부의 영업
권으로 인식하여 이를 가중평균내용연수를 구하여 정액법으로 환입
하지 아니한 채 당해연도에 일시 환입하여 162.97억원 상당의 당
기순손실을 163.05억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으로 과다 계상한 대차
대조표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01. 5. 15.경 1/4분기
분기보고서, 같은 해 7. 30.경 유가증권신고서, 같은 해 8. 14.경
반기보고서, 같은 해 11. 14.경 3/4분기 분기보고서, 같은 해 12.
3.경 유가증권신고서를 각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부의 영업권
을 일시 환입하여 허위로 작성된 1999회계연도 및 2000회계연도
의 재무제표를 포함시켜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으로써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것이다.

VI. 적용법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8조, 제186조의2, 제186조의3.

VII. 참고사항

한화석유화학(주)가 1999회계연도 기간 중 NCC부문을 현물출자(지분 50%)하여 대림산업과 합작법인으로 여천NCC(주)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유형자산처분익을 지분법평가시 미실현이익으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의 당기순이익 1,033억원을 과대계상하고, 2000회계연도에는 동 미실현이익을 출자지분만큼인 50%만 제거함으로써 이익잉여금 450억원을 과대계상하고, 지분법평가이익 65억원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고발대리인 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 박근용은 고발사실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화석유화학(주)에 행정제재를 가할 때 위 사실도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하였으므로 본 건과 함께 조사함.

2004.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검찰주사보 조상신